

#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)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60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입안이유

가.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한 베트남대사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신청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) 변경코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(변경) 조서  
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	면적 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 후		
계		4,031.0	-	4,031.0	100.0	
주거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2,904.0	증) 280.7	3,184.7	79.0	
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1,127.0	감) 280.7	846.3	21.0	

- 용도지구(경관지구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 세분	위치	면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변경	-	인왕 지구	자연 경관 지구	종로구 삼청동, 세종로동, 옥인동, 누상동, 사직동, 청운동 일대	750,426 (3,112)	감) 3,112 (감) 3,112)	747,314 (-)	1977.12.03 (건설부고시 제235호)	

※ ( )는 대상지(주한베트남대사관) 면적임

### 3. 추진경위

- 2010.01.21. :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 
(※ 북촌7구역 내 3,000 $m^3$  이상 부지 신축 시 자동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 간주)
- 2019.02.20. :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(안) 신청  
(주한 베트남대사관 건축계획안, 면적 4,031 $m^3$ )
- 2019.02.21. :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(14일간)
- 2019.03.19. 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용도지구) 결정 요청  
(市한옥건축자산과 → 市도시계획과)

### 4.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안) 주민의견 청취 등

- 가. 공람기간 : 2019.2.21. ~ 3. 7 (14일간)
- 나. 주민 제출의견 : 없음
- 다. 관계부서 의견 : 따로붙임

#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계획과 지역계획팀 장영준 (☎ 2133-8327)

### 붙임 1. 위치도

### 2. 도시관리계획(기정·변경) 결정도

붙임1) 위치도



## 붙임2) 도시관리계획(기정·변경) 결정도

